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0,599,626	15,917,989
일반회계	442,248,400	13,267,452
특별회계	88,351,226	2,650,537
공기업특별회계	62,581,109	1,877,433
공영개발특별회계	14,969,209	449,0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196,580	515,897
하수도특별회계	30,415,320	912,460
기타특별회계	25,770,117	773,104
의료급여특별회계	279,626	8,38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03,162	21,095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117,947	93,538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3,014,319	90,43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543,267	46,298
수질개선특별회계	15,518,953	465,5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81,000	20,43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11,843	27,35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89,72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9,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특), 시군조정교부금등(재)

제 9 조 금회 추경 후 12월 31일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